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2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식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7. 19.
3. 회 부 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유사한 역학조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동법 제16조에 따른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직업성질환¹⁾역학조사²⁾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역학조사) ①·② (생략)	제17조(역학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1) “직업성질환”이란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종사한 근로자들이 특수한 작업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됨으로써 얻게 되는 질환을 의미함(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2) “역학조사”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따위를 위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따위의 활동을 하는 일을 의미함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 제17조는 소방청장에게 소방공무원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 원인 규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소방관서의 장과 소방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항).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정보와 더불어 다른 인구 집단의 질병 및 사망 관련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임.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금지되어³⁾,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를 법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에 명시하지 않는 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그동안 소방청의 직업성질환역학조사는 공무상 부상이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⁴⁾를 신청한 소방공무원에 한정해서 그 질병과 직무와의 관련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①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③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시행하려는 취지로 보임.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개정안에 따라 소방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목록>

근거 법률	정보	관련기관
「소방보건법」	①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기관
「국민건강보험법」	② 영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관리법」	③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국립암센터 등
-	④ 기타 정보	

개정안과 같이 소방청장이 필요한 의료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 소방 직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면서 직무와 질병의 연계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내용의 타당성은 인정되며,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⁵⁾.

첫째,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의 정보”로 규정하여, 소방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법률에 예시적으로

5)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소방관들은 직업적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방관 집단과 다른 집단을 비교하는 코호트 연구와 같은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2023년도 국립소방연구원 연구보고서 「신임소방관 체내 유해물질 수준변화 분석 및 중장기 소방 코호트 연구 설계」)

* “코호트 연구”란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코호트)을 장기간 추적 관찰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원인에 의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방법을 의미함 (출처: 두산백과).

나열하고 있는데,

건강 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⁶⁾를 고려할 때 소방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산업·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종류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요청 가능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⁷⁾.

6)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7) 또 다른 유사입법례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2025.3.20. 시행 예정)

제57조의2(역학조사) ⑤ 인사혁신처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내역(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복지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결과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5.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둘째,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처리해야 하는 민감정보를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동의 없이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⁸⁾.

8) 참고 입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유해물질 등 위험에 장기·반복적 노출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업성질환의 진단, 원인 규명, 예방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조항 마련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소방청은 현행법 제17조 제1항은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그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6.3.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역학조사 사례

※ 자료: 소방청

□ 외국 연구 사례

○ [세계보건기구(WHO)]

-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방업무의 일부 암에 대한 발암성 확인*('22.7.1.)

* 소방업무 유해인자 노출의 발암성 분류를 기존 Group 2B(인체 발암 가능)에서 **Group 1(인체 발암 증거가 충분함)**로 분류

【국제암연구소(IARC) Monograph Vol.132 주요 내용】

- (인체 암발생 충분한 증거) 중피종, 방광암
- (인체 암발생 제한적 증거) 대장암, 전립선암, 고환암, 피부흑색종, 비호지킨 림프종
- (적용범위) 화재진압, 차량사고·응급구조·유해물질누출·건물붕괴 등 재난대응 업무 등
- (유해인자) 화재 연소물, 디젤배출물질, 건축물 방출물질, 석면, 유해화학물질, 교대근무, 자외선 등

○ [미국]

- 미국 정부는 소방관의 암 발생 위험을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정부법(소방관 암 등록법*)에 따라 연방정부 연구기관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소방관의 암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연구(국가 소방관 암등록 사업**) 추진 중

* Firefighter Cancer Registry Act 2018 (H.R.931)

** National Firefighter Registry (NFR) for Cancer

【미국 국가 소방관 등록 프로그램】

- **(사 업 명)** 국가 소방관 암등록(National Firefighter Registry, NFR) 사업
- **(추진근거)** 소방관 암 등록법(연방정부법 H.R.931-Firefighter Cancer Registry Act, 2018)
- **(수행기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 질병통제센터(CDC) 소속 연구기관
- **(주요내용)**
 - 국가 소방관 등록 시스템 구축('20), 인구집단 구축-지원자 모집, 등록('21~'23)
 - 인구집단 분석, 결과 전파('24~)

□ 국내 연구 사례

- [소방공무원 관련] 화재현장 출동 소방관의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벤젠,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납,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관련 연구를 통해 확인

※ 소방공무원의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에 잔류성 유기물질 노출 평가 및 장기적 건강영향 추적조사를 위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집단 역학조사) 추진 필요

【 유해물질 노출 관련 연구 결과 주요 내용 】

- 화재진압 시 공기 중 미세먼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성 물질에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노출(소방방재청, 2011; 중앙소방학교, 2018)
- 화재진압 후 소변 중 (잠재적) 발암성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PBDEs(브롬계 난연제) 대사산물 농도가 화재진압 전에 비해 유의한 증가(소방방재청, 2011; 부산소방재난본부, 2020)
- 화재진압 후 방화복과 대원 피부 표면 PAHs 오염 증가(중앙소방학교, 2017)
- 화재현장 출동 차량의 표면먼지에서 일반차량에 비해 PAHs와 PBDEs가 높은 농도로 검출(부산소방재난본부, 2020)
- 신임 소방관의 소변 중 PAHs 대사산물, 혈액 중 납과 카드뮴 농도가 직무기간에 따라 증가(국립소방연구원, 2023)